

FTA 협상에 국내 주류업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손영권 주류1팀 차장

최근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개방화 되어가고 있다. 미국·EU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상에 동참하고 있으나 WTO 다자간 협상은 많은 회원국의 입장조율이 어렵고 모든 협상의제를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하고 있어 협상타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WTO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감으로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1998년부터 주요 교역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6년 3월에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으며, 2006. 9월에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가 발효되었다. 한·아세안 FTA도 사실상 타결되어 국회 비

준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로 2007년 상반기 중에 발효가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다수출국 중의 하나인 미국과의 협상을 비롯하여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EU와 FTA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와 주류의 상호교역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국내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과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 FTA협상, 그리고 향후추진이 예상되는 한·중 FTA협상은 상대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주류업계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상결과를 볼 때 FTA협상의 주요 쟁점사항은 관세양허와 원산지 인정기준에 대한 협상이다. 한·칠레 FTA관세양허협상에서 증시, 5년, 7년, 9년, 10년, 16년, DDA이후 재논의 등 관세양허 방식 중에서 소주, 맥주 위스키등 대부분의 주류는 5년

관계양허 협상에서도 협상대상국에 우리주류의 수출실적과 상대국가 주류의 수입실적 그리고 향후 교역가능성 등을 주종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국에 맞는 다양한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철폐하고, 발효주정은 DDA 협상 이후 재논의 하기로 합의 되었으며 한·싱가폴 FTA 협상에서는 증시, 5년, 10년, 양허제외의 관세양허방식 중에서 맥주와 위스키는 10년 철폐하고 소주와 발효주정은 양허제외 하기로 합의되었으며,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서는 증시, 3년, 5년, 7년, 10년, 양허제외등의 관세 양허방식 중에서 맥주와 소주, 위스키는 10년 철폐하고 발효주정은 양허제외로 합의되었다.

현재 8차협상까지 진행한 한미 FTA에서 미국은 모든 주류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따라서는 일부 주류의 경우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등 주류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인정기준 협상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되며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 번 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식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방식, 그리고 두가지를 혼합해서 협상하는 방식이 있으며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용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주류의 원산지인정기준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협상에서는 세 번 변경기준으로 CTH 4단위 변경기준에 부가가치45%를 동시에 충족 했을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 되었

으며, 한·싱가폴 FTA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서는 CTH 4단위 변경기준으로 합의되었으며, 한·아세안 FTA는 CTH 4단위 변경기준에 부가가치 40%를 동시에 충족 했을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되었다. 현재 협상중인 한미 FTA에서는 세 번 변경기준을 적용하기로 원칙에는 합의되었으나 HS4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과 2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산지인정기준 협상을 볼 때 관세양허와 마찬가지로 상대국에 따라서 다양한 인정기준으로 합의 되고 있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원산지인정기준을 협상할 때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와의 협상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효과적이며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국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 유효하다. 원산지인정기준 협상은 상대국의 경제수준과 농산물 생산량과 가공산업의 수준과 함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 관세양허 협상에서도 협상대상국에 우리주류의 수출실적과 상대국가 주류의 수입실적 그리고 향후 교역가능성 등을 주종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국에 맞는 다양한 협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